

# 석유판매업 [ ] 변경등록신청서 [ ] 변경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(신고인)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접수번호             | 접수일자                      | 처리기간   | 4일 |
| 신청인<br>(신고인)     |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상호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(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) |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|
| 신청<br>(신고)<br>내용 | 변경내용                      | [ ]성명 또는 상호 [ ]대표자 [ ]주된 영업소 소재지<br>[ ]시설의 소재지 [ ]시설의 규모 |    |
|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|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3항·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[ ]변경등록신청 [ ]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 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(귀중)  
한국석유관리원

| 첨부서류  |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| 수수료 |
|---|--|-----|
| 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<br>2.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|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| 없음  |

